

監査業務環境과 監査의 質에 관한 研究

李 相 奉*

目 次

- I. 序 論
- II. 競爭的 環境下에서의 監査의 質
- III. 監査業務環境과 監査計劃
- IV. 時間豫算壓迫下에서의 監査人の 行爲
- V. 結 論

I. 序 論

1980년에 공포된 "株式會社の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의 취지에 따라 감사인의 업무를 제한하고 감사인의 조직 및 등록과 관련하여 공정한 외부감사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1982년 2월 재무부는 "監査人の 業務에 관한 規程"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의 업무 수입은 配定制度에서 점차 自由競爭을 바탕으로 한 自由受任制度로 변환되어 왔다.

이러한 自由受任制度는 감사인의 能力과 資質에 따른 公正競爭을 유도함으로써 감사의 質的 改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配定制度하에서 제시되었던 監査基準과 準則에 미달되는 不實監査, 初度監査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능률적인 감사 등의 감사인의 전문성 결여에 관련된 문제점¹⁾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는 組織中心의 業務受任制度를 도입함으로써 감사인의 실질적인 組織化와 업무시 質的 向上을 기하며 國際化를 추진하고 둘째, 會計監査, 稅務, 기타 經營諮問 등 分野別 專門化를 통하여 사회적 信賴度를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 經商大學 會計學科

1) 윤중안, "외부감사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운영방안" 상장협, 1988, p.32.

그러나, 이 제도는 監査受任에 대한 過當競爭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어 보다 많은 감사업무의 수입을 위한 회계법인간에 치열한 경쟁을 야기시켰으며 이로 인해 監査契約 단계에서부터 감사인의 獨立性和 公正性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外部監査制度의 전반적인 公信力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²⁾

會計法人間에 監査受任을 위한 過當競爭은 監査手數料引下(fee cutting), 勸誘, 감사서비스의 質低下, 意見購讀(opinion shopping) 및 집단적 존경심의 상실 등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에 逆效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회계법인에서는 감사수입 경쟁에 대응하여 감사수수료를 비합리적으로 줄이게 되고 그 결과 監査時間이나 監査人力을 비합리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서 基準以下の 업무를 조장시켜 監査의 質을 떨어 뜨리게 된다. 더구나, 부정한 회계처리의 묵인과 미리 약속된 監査意見 表明 등의 문제로 감사인의 獨立性和 適格性에 관련하여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³⁾

실제로 부당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불성실한 감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증권감독원의 감리과정에서 지적된 부실감사의 비율은 1987의 경우 감리대상회사의 25%, 1988년의 경우 15%에 이르고 있는 실정⁴⁾이며 1990년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리대상회사 310개사 중 21%인 65개사가 분식 및 부실회계로 지적을 받은바 있다(한국경제신문, 1991.5.2). 이 처럼 감사업무의 수행결과 감사인들이 제시하는 감사의견이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할 정도로 허위재무보고의 묵인, 또는 간과등으로 감사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감사의 사회적 존립의의에도 문제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 때문에 감사수입의 자유화 이후 경쟁적 감사환경하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감사업무의 질적 유지이며 이러한 문제는 전문회계업계 뿐만 아니라 공공재로서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서도 중요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감사인들의 업무환경을 검토함으로써 감사업무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들을 업무환경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감사업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질 저하행위를 감사인의 업무환경과 관련하여 그 원인을 찾아 보려는 것이다.

II. 競爭的 環境下에서의 監査의 質

監査의 質이란 감사인의 피감사인의 회계조직내에 존재하고 있는 일정 評價基準으로 부터의 違

2) 남상오, 김성기 “외부감사제도에서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1987, p.13.

3) W.K.Kunitake and C.E.White, JR, “Ethics for Independent Auditors,”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1986, pp.222~225.

4) 증권감독원 외부감사제도 개선위원회, 외부감사제도개선(안), 1987.7.4.

反事項을 발견하고 이러한 違反事項을 사실대로 보고하게 될 結合確率⁵⁾을 말한다. 이 경우 감사인이 위반사항을 발견하게 될 확률은 특정감사인의 기술적 능력수준과 특정감사에서 채택하게 되는 監査節次 및 實施範圍 등에 의해 좌우되고 감사인이 감사결과로서 발견된 위반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할 확률은 특정 피감사인과 獨立性 程度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의 질은 감사인의 適格性과 獨立性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며 감사인의 적격성은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감사인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적격성이 갖추어 졌다고 해도 信義誠實性 즉, 전문가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注意(due professional care)를 다하여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監査의 質은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쟁적 환경하에서 독립성 문제와 관련하여 Schockley(1981)는 감사수입경쟁이 매우 심한 경우에 독립성 상실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⁶⁾ DeAngelo(1981)는 피감사회사에 간청하는 감사인은 나중에 보상을 기대하면서 초기에 낮은 감사수수료를 제시한다고 하고 이러한 低監査手數料(low-balling)는 나중에 보상을 기대하는 감사인들이 피감사회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論理的 基準以下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⁷⁾이라고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Boland(1982)는 감사인이 경영진을 너무 신뢰하고 회계원칙 선택에 있어 경영진의 해석을 너무 쉽게 받아주며 분명한 財務報告上的 濫用을 간과하고 고객의 관심사에 너무 동정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⁸⁾ 자유수입제도 도입 이후 경쟁적 감사환경에서 감사인의 교체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인의 독립성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한 이 효익(1990)의 연구에서는 현행의 자유경쟁에 의한 감사수입제도하에서 피감사인이 의견구매를 목적으로 감사인교체를 시도할 경우 성공가능성이 크고, 감사인교체라는 부당한 압력수단에 의해 후속감사인의 독립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고 있으며, 부실감사에 대한 감리지적비율은 특정 피감사회사와의 관계에서 감사인의 독립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⁹⁾ 부실감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독립성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감사인들이 제품시장의 원리를 따르고 경쟁을 하는 것은 감사인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위험이 되고 그 결과 경쟁적 행위는 직업전문가로서의 객관성과 성실성 및 제공하는 서비스질에 공공성을 잃게 되는

5) L.E.DeAngelo,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Economics (December 1981), p.186.

6) R.A.Scholckley, "Perception of Auditors' Independence: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81), pp.785-800.

7) L.DeAngelo, "Auditor Independence, Low-balling and Disclos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August 1981), pp.113-126.

8) R.Boland, "Myth and Technology in America Accounting Profession"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1982, p.113.

9) 이효익, "감사인의 교체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자유수입제도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¹⁰⁾ 때문에 감사수입을 위한 과당경쟁은 감사인들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공하는 감사업무 자체에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독립성문제 이외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감사수수료할인은 회계법인에게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시킬 수 있다. 자유경쟁에 의한 수입제도가 실시된 이후 감사인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감사수수료의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¹¹⁾되고 있으며, 또한 피감사회사들이 감사인 선정시 감사수수료할인을 중요한 요인¹²⁾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공정거래 분위기조성과 1992년 서비스 시장개방을 앞두고 1990년 7월에 개정된 공인회계사 職業倫理規程에서도 제한적인 광고금조항이 삭제되고 규정보수금액이하 수입금지조항이 삭제 됨에 따라 감수보수의 할인을 통한 경쟁이 더욱 가증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감사수수료할인을 통한 수입경쟁 상황하에서 회계법인의 입장은 경쟁적 운영을 위해 감사비용을 최소화하거나 통제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¹³⁾를 갖게 된다. 즉, 감사수수료가 낮아질수록 회계법인은 한계이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임금을 포함한 감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통제하면서 효과적으로 감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인력을 덜 투입하게 되고 감사에서 소비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¹⁴⁾ 이런 이유로 監査時間豫算(audit time budget)은 監査能率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原價統制手段¹⁵⁾으로 이용되고 있다.

Rhode(1978), Alderman & Deitrick(1982)의 연구에서는 경쟁적 상황하에서 감사시간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 Cook & Kelley(1988)¹⁶⁾는 1982년과 1988년 사이에 감사인들이 時間豫算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senior)와 감사보조인(audit staff)인 경우 특정감사에서 시간예산이 실무적으로 달성불가능한 정도로 매우 타이트하다는 응답이 1982년 18%에서 1988년 36%로 파트너(partner)와 매니저(manager)인 경우 9%에서 22%로 증가 추세를 보이

10) W.K.Kunitake and C.E.White, JR, op.cit., p.224.

11) 이만우, "회계감사에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 1988.2, p.32.

12) J.P.Bedingfield and S.E.Loeb, "Auditor changes-An Examination," The Journal of Accountancy (March 1974), pp.66 '69.

최문원, "자유경쟁 감사계약제도하에서 감사인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이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선정요인은 자산규모 300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감사보수와 친분관계, 그 이상인 회사의 경우 추가서비스, 감사의견, 은행 및 관련기관의 권유이다.

13) R.Schockley and R.N.Holt, "A Behavioral Investigation of Supplier Differentiation in the Market for Audit Servic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Autumn 1983), pp.545~563.

14) D.E.Marxen, "A Behavioral Investigation of Time Budget Preparation in Competitive Audit Environment," Accounting Horizons(June 1990), pp.47~49.

15) L.McDaniel, "The Effects of Time Pressure and Audit Program Struture on Audit Performan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90), pp.267~284.

16) E.Cook and T.Kelley, "Auditor Stress and Time-Budgets," CPA Journal (July 1988), pp.83~86.

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간예산 압박에 대한 중요 원인들로서 응답자들은 피감사회사의 감사수수료에 대한 압박을 들고 있어 회계법인에서 감사시간을 줄이는 경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監査時間이나 監査人力의 투입을 줄임으로서 監査費用을 절감하려는 문제는 감사시간에 대한 계획과 그에 따른 감사일정이 타이트해지고 이에 대한 壓迫感(pressure)과 보고서 마감기한에 대한 압박감은 감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Rhode(1978)¹⁷⁾가 조사한 1526명의 감사인 중 50% 이상이 감사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감사절차에 의해서도 검토되지 않은 감사절차를 실제 수행한 것처럼 完了表示(sign-off)함으로서 기준이하의 질적수준으로 감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그 원인은 時間豫算 및 마감기한 압박이라는 보고를 한 이후 Lightner 등(1983)¹⁸⁾과 Alderman & Deitrick(1982)¹⁹⁾은 Rhode의 연구결과에 의문을 갖고 時間豫算壓迫(time budget pressure)의 결과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Rhode의 연구결과는 지지되었고 대형회계법인에서의 실질적 시간압박은 계획된 監査效果性(effectiveness)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경쟁적 감사환경에서 감사인들이 겪게 되는 문제는 감사인의 독립성 상실위험과 회계법인 자체 내에서의 감사비용 절감을 위한 감사시간과 감사인력을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 나타나는 監査質 低下問題로 나누어질 수 있다.

自由受任制度 도입 이후 감사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수행한 감사가 會計監査基準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으며²⁰⁾ 실제로 부당한 감사 보고서의 작성 및 불성실한 감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증권감독원의²¹⁾ 監理過程에서 지적된 不實監査의 비율은 1987년도의 경우 監理對象會社の 25% 1988년의 경우 15%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그 내용은 企業會計基準의 違反事項 未指摘, 監査報告書의 不實作成(註釋事項, 특별한 未記載)과 감사절차의 실시소홀 등으로 그 주된 내용이 감사절차의 省略이나 重過失(gross negligence)에 해당하는 감사실시상의 誤謬이다. 특히 不實監査의 類型 중 企業會計 基準에 위배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不實監査 指摘件數 중에서 34%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에도 국내 기존 연구에서는 自由受任制度下에

17) J. Rhode, "Survey on the Influence of Selected Aspects of the Auditor's Work Environment on the Professional Performance of CPAs," A study and Report for the Commission on Auditors' Responsibilities of AICPA, 1978, pp.167-174.

18) S.M.Lightner, S.T.Adams, and K.M.Lightner, "The Influence of Situational, Ethical, and Expectancy Theory Variables on Accountants' Underreporting Behavior",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Fall 1982), pp.1~2.

19) C.W. Alderman and J.W. Deitrick, "Auditors' Perception of Time Budget Pressure and Premature Sign Off: A Replication and Extension,"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Winter 1982), pp.54~68.

20) 윤종안, 견제서, p.11.

21) 한국 증권감독원 감리위원회, "1988년도 업무실적 보고서", 1989, pp.24~25.

서 감사제도 확립과 감사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獨立性和 관련하여 연구된 것²²⁾이 대부분이며 監査質을 평가하는데 있어 個人的 特性(年齡, 轉職經驗 등)과 조직특성에 따라 감사질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연구한 이원창(1989)²³⁾의 연구에서도 감리지적을 받은 경험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監査의 質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감사절차를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만 監査의 質을 논의하는 것이며 어떤 이유로 不實監査 등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하는 원인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監理委員會의 감리실시결과 지적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감사인들이 감사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감사절차 실시상의 오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監査基準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감사가 監査節次的 省略, 適用上的 誤謬, 判斷錯誤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감사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監査失敗의 주된 원인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질 저하의 原因行爲를 하는 개별감사인들이 감사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자유경쟁적인 업무수입 환경하에서 감사인들의 조직구조와 업무환경을 검토하고 그런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감사업무의 질과 관련하여 검토함으로써 감사의 질적인 문제를 독립성문제와는 별도로 감사업무 자체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Ⅲ. 監査業務環境과 監査計劃

1. 監査計劃과 時間豫算

일반적으로 豫算(budgets)과 豫算過程(budgetary process)은 經營統制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른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에서도 감사인들이 감사목적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인들의 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기 위해 예산 및 예산시스템(budgetary system)을 이용한다. 실제 會計監査基準 第16條 第2項 監査計劃의 수립에서는 “회사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監査危險에 관한 예비적 평가에 근거하여 적절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감

22) 남상오, 김성기, 전계서.

이효익, “감사인의 교체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자유수입제도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0.8.

송충서,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해관계자집단의 지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88.

하문훈, “감사인의 독립성과 저항능력인식에 관한 연구—피감사회사의 갈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86.

23) 이원창, “감사인 특성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에 관한 연구,” 회계학 연구 제9호, 1989, pp.259~283.

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한다.”고 하여 적절한 감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인들은 財務諸表의 適正性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증거수집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감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充分하고도 適格한 監査證據(sufficient competent evidence)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과 그 방법은 감사증거를 수집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인들은 감사업무의 效率性和 費用을 고려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監査計劃(audit program)은 감사인이 財務諸表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때 기초가 되는 합리적인 증거를 얻기 위하여 감사업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²⁴⁾. 이러한 감사계획은 ① 豫備計劃(豫備調査) ② 諸般 背景情報의 수집 ③ 피감사회사의 法的義務에 대한 정보모집 ④ 重要性·事業危險·監査危險 및 固有危險評價 ⑤ 内部統制構造의 이해와 統制危險의 평가를 거쳐 ⑥ 全般監査計劃과 細部感謝計劃을 수립하게 된다²⁵⁾.

監査計劃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豫備調査를 통하여 감사대상회사의 환경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감사인이 수집해야하는 정보는 크게 외부환경적 요소, 내부환경적 요소, 회계시스템에 관한 정보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감사계획 수립단계에서 감사인은 重要性金額에 대한 기준을 事前的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重要性(materiality)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정보의 누락이나 부정확한 표시가 그들 정보를 이용하는 정상인의 의사결정을 바꾸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의 크기”를 의미한다.²⁶⁾ 이러한 중요성 금액은 계정잔액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例外事項을 감사인이 수용할 수 있는 최고 한도금액이 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설정된 중요성의 수준을 넘어서는 例外事項을 적발할 수 있도록 監査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계획의 그 다음 단계는 피감사회사의 内部統制構造를 개략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주로 피감사회사의 각종 규정, 장부조직, 원가계산제도 및 예산제도등을 살펴봄으로서 内部統制構造를 평가하게 된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결과는 이에 대한 의존정도를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며 감사전략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합리적인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충분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監査證據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같은 監査證據는 일반적으로 計定殘額 立證監査에서 얻어진다. 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각종의 감사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입증감사절차의 수행결과 감사인은 합리적이고 충분한 감사증거가 수집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면 감사계획을 수정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감사

24) 이효익, 현대회계감사론, 무역경영사, 1989, p.252.

25) 윤종안, 전계서, p. 329.

26)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2, "Qualitative, Chara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1980), p.x v.

증거를 보완하여야 한다. 監査人이 監査證據의 充分性에 만족을 얻게 되면 감사결과 적발한 예외사항을 집계한다. 집계된 예외사항에 대해서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에 대해 決算節次를 통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만약 감사대상회사가 例外事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를 거부한다면, 감사인은 반영되지 아니한 예외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적절한 감사의견을 결정하게 된다. 監査節次의 최종단계는 감사절차를 통해 발견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다.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통하여 발견된 사항을 監査報告書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므로 감사단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의 최종산출물이며 감사인은 그 보고 내용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감사계획과 관련된 감사실시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1>²⁷⁾과 같다.

감사계획은 감사증거의 합리적 수행을 위해 감사업무를 체계화, 조직화시키기 위한 업무의 사전적 결정 및 나열로 정의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²⁸⁾.

첫째, 監査業務의 標準化를 할 수 있다.

둘째, 동일한 절차를 중복하여 실시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누락시키는 위험을 줄임으로서 감사업무를 論理的 順序에 의하여 效率的으로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감사에 소요되는 資源 즉, 감사요원이나 보조자, 감사도구 등의 배치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넷째, 部門別로 監査人間의 責任所在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다섯째, 감사요원과 보조자 감독을 원활하게 하며, 감사인의 업무를 평가하고, 또한 감사실시에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全般監査計劃은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基本計劃이며 이에 따라 細部監査計劃을 수립하게 된다. 細部監査計劃은 감사업무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施行豫定表로서 객관적인 監査基準과 감사인의 專門家的 判斷에 의하여 意見形成에 기초가 될 합리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監査技術을 선택하고, 그 적용의 適時性和 秩序性이 확보되도록 감사업무를 목록한 것이다. 세부감사계획 작성시에 고려되는 것은 주요 항목별 또는 계정별로 적용할 감사의 實施節次, 適用範圍, 監査要點, 所要人員, 實施時期, 所要時間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는데²⁹⁾ 통제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감사인에게 개별적인 업무를 배정하고 각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추정하는 것이다.

소요시간에 대한 추정은 監査時間豫算(audit time budget)이라고 하며 이러한 시간예산(time budget)은 감사업무의 각 단계별로 所要時間을 추정하여 업무량에 필요한 目標時間(target time)을 세우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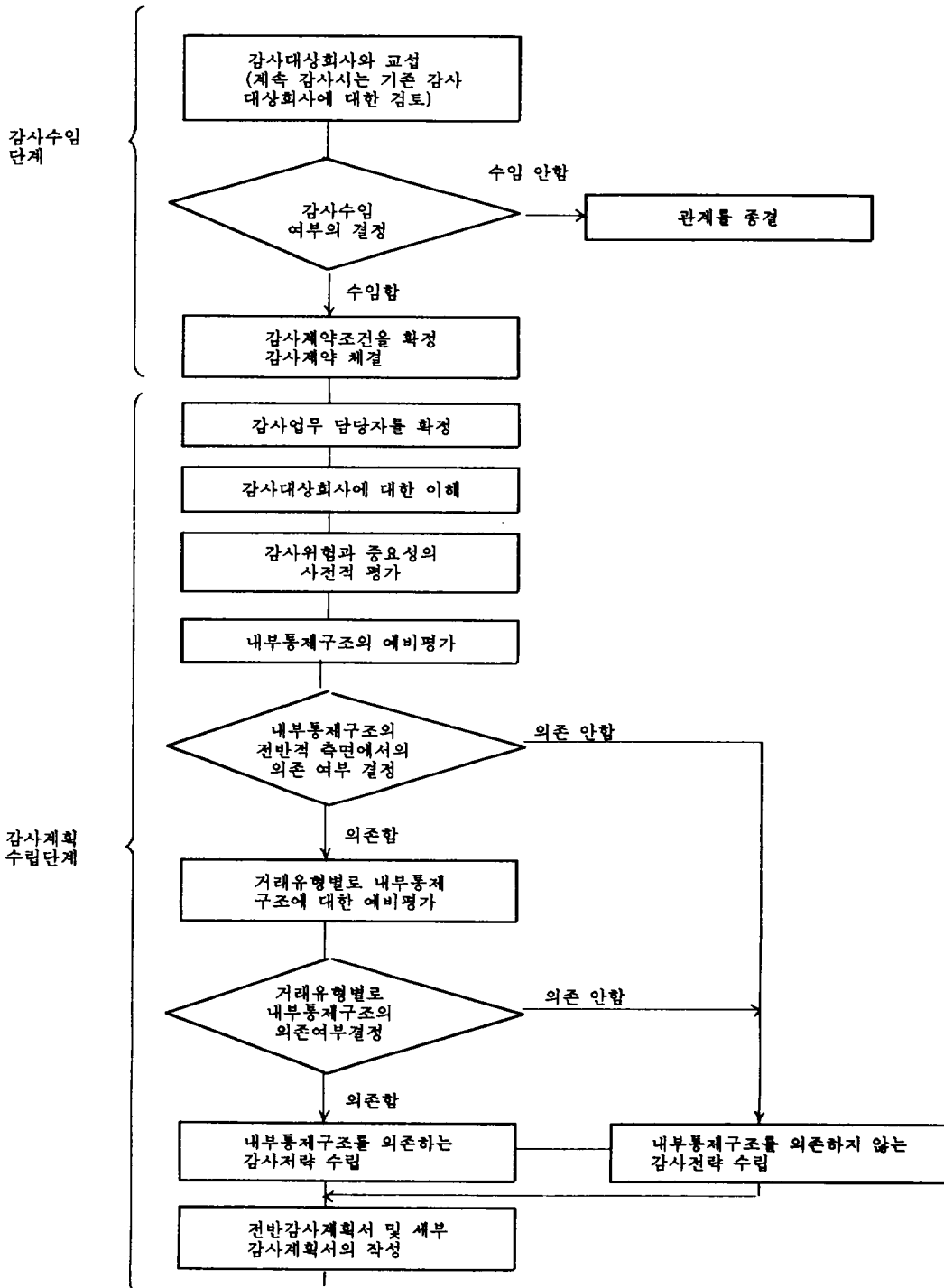
17) 조익순, 이만우, 회계감사, 박영사, 1991, pp.4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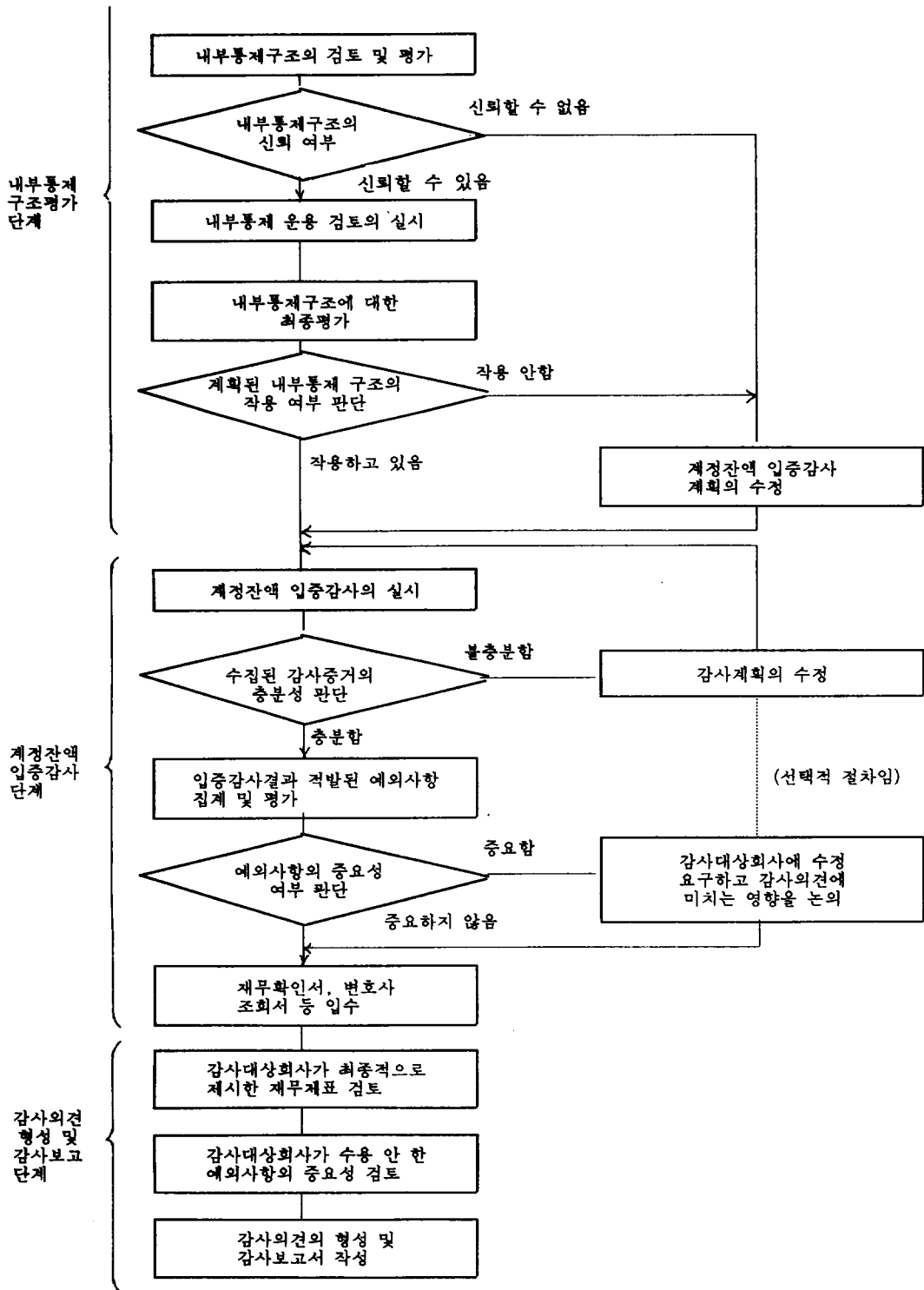
28) 전계서, p.223.

29) 이효익, 전계서, pp.252'264.

30) The Commission on Auditors' Responsibilities : Report of Tentative Conclusions, New York, The Commission on auditors' Responsibilities, 1977, pp.106~118.

〈그림1〉 감사실시과정의 흐름





- 一. 査費用을 추정할 수 있는 基準
- 一. 회계법인내 업무에 대한 計劃 및 人員配置의 手段
- 一. 감사인들에게 기대되는 업무량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一. 보조감사인들의 成果를 監督하는 手段
- 一. 감독자가 각 監査段階에서 소비된 시간이 效率性和 效果性を 검토할 수 있는 手段
- 一. 精確하게 分析되는 경우 監査의 效率性を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간예산은 現金, 賣出債權照會, 在庫資産의 實査, 證憑對照 등과 같이 여러 활동 분야 별로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각 활동에 적정한 인원배치를 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이용되며 각 감사활동의 수행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그외 각 단계별 추정시간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로서 이용되어 진다.³¹⁾

- 1) 적절한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각 활동에 적절한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效果的인 人力配置(manpower assignment)을 할 수 있다.
- 2) 다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완수해야 하는 활동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監査業務를 論理的 順序에 의해 效率的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 3) 필요한 作業時間과 業務形態에 따라 監査報酬를 결정할 수 있다.
- 4) 實際 소비된 시간을 監督하고 그것을 豫定時間과 비교함으로써 統制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個別監査人의 成果評價(performance evaluation)를 할 수 있다. 즉 監査의 能率과 效果를 判斷하는 手段이 된다.
- 5) 업무가 원래의 日程計劃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 이것을 바로 문제시하여 잘못된 정도를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다. 이것은 예상 작업시간에 관해 피감사회사와 보다 나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완료날짜를 재조정할 수 있게 한다.
- 6) 장래의 時間豫算 設定과 次期監査의 참고 자료가 된다.

그러나, 업무배정이나 시간예산은 業務複雜性 程度(예를들면, 專門家的 判斷)와 각 개별감사인의 능력과 기술에 대한 계획작성자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된다³²⁾. 그러므로 각 개별감사인의 한정된 시간(시간예산내)에 할당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計劃作成者에 의한 期待라고 할 수 있다.

31) T. Kelley and R.E. Seiler, "Audit Time budgets: A Cost-Benefit Analysis," The Woman CPA, (October 1986), kpp.18~20.

C.W. Aodermen and J.W. Deitrick, op.cit., p.54.

32) J. Jiambalvo and J. Pratt, op.cit., pp.734~750.

2. 時間豫算과 統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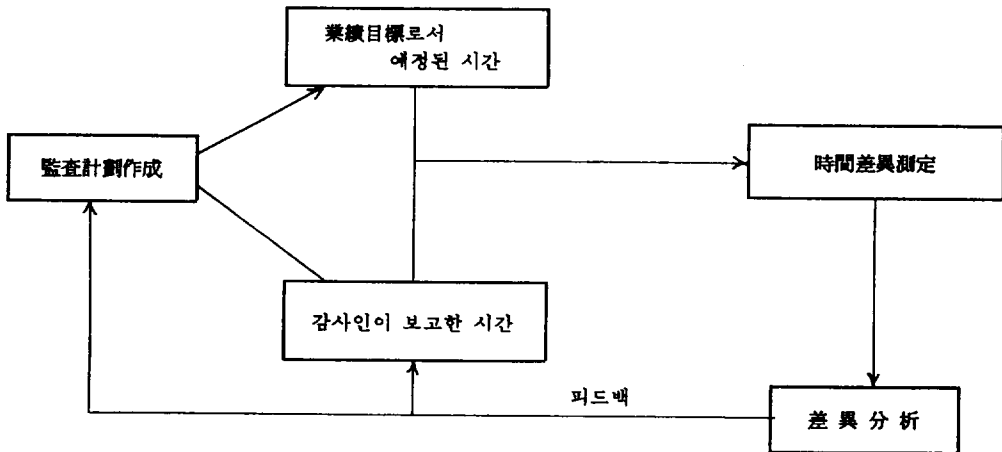
成果評價와 統制機能으로서의 예산은 豫算과 實際成果를 비교하여 部門 및 部門經營者의 成果를 평가함으로써 豫算시스템에 의하여 통제되는 중간경영자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Searfoss (1976)에 의하면 예산은 실질적으로 조직의 목표 그 자체가 되므로 조직의 성공은 예산목표의 준수에 달려 있다고 한다. 즉 예산은 조직의 바람직한 상태를 나타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實際成果가 측정되면 이 實際成果는 豫算과 비교된다. 그리고 豫算과 實際와의 差異를 측정하여 차이의 원인과 중요성을 평가한 후 미래성과가 예산과 일치되어 組織의 目標가 달성될 수 있도록 수정조치를 취해야 한다³³⁾는 것이다.

監査業務를 監督하고 統制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은 보통 자체내의 통제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러한 시스템의 중요요소는 監査時間豫算을 중심으로 한 豫算統制過程이다. 이러한 豫算統制過程은 個別監査人들이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비된 실제시간을 나타내는 時間報告書(time report)를 2주 단위 또는 반 달 단위로 제출토록 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림2〉은 그런 예산통제과정을 나타내고 있다.³⁴⁾

〈그림2〉 會計法人에서 豫算統制過程



33) G.Searfoss, "Some Behavioral Aspects of Budgeting for Control: An Empirical Study,"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Vol.1, 1976, p.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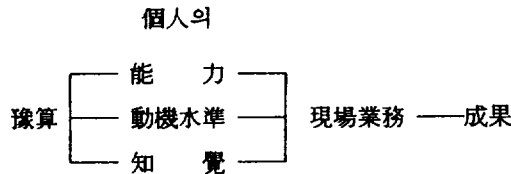
34) M. Ibrahim, "An Examination of an Integrative Expectancy Model for Auditors Performance Behaviors under Time budget Pressure, North Taxa State University, Unpublished Dissertation, 1985, pp.1~6.

〈그림2〉에서 처럼 일단 시간예산이 정해지면, 그것은 할당된 업무에 관련하여 달성해야 하는 成果目標(performance goal)로서 역할을 한다. 이것은 각 개별 감사인이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시간예산에 맞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업무수행결과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예정된 시간이상으로 또는 그 이하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

예산통제시스템은 감사인이 보고한 實際時間과 豫定된 時間의 비교를 통한 差異(variance)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時間差異의 內容과 狀況分析은 監査計劃作成者와 個別監査人에게 피드백된다. 감사계획 작성자에 대한 피드백은 개별감사인에 대한 業績評價, 監査人 報酬水準, 被監査會社와의 監査手數料 등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개별감사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피드백은 다음 업무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이런면에서 시간예산은 監査能率을 개선하고 原價統制手段으로 이용되는 것이다³⁵⁾.

그러나 成果評價基準으로서의 時間豫算이 잘못 이용되거나 감사인들에게 壓力手段이 되는 경우 여러가지 逆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감사인들 특히 책임회계사(incharge)와 보조감사인들은 개별활동에 대한 시간을 관리해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實際作業時間이 成果評價基準인 時間豫算에 맞추지 못하고 예산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차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며, 또한 예정된 시간에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監査技術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감사인의 능력과 시간예산에 맞추는 능력 및 업무량은 개별감사인들의 승진이나 성공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³⁶⁾. 더구나 회계법인의 관리자들은 정확한 시간보고와 감사업무 영역내에서 시간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를 하기 때문에 특정활동에 있어 시간예산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두려움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³⁷⁾

심리학자와 행동학자들은 成果는 대개 組織參與者와 組織環境에 관련된 物理的 要因 뿐만 아니라 心理的 要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成果는 豫算시스템과 人間行動의 結果라고 하고 있다. Porter and Lowler(1968)에 의하면, 成果는 能力, 動機賦與, 組織役割知覺을 포함하는 변수들의 함수로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³⁸⁾



35) L.S. Mc Daniel, op.cit., p.268.

36) The Commission on the Auditors' Responsibilities, op.cit., pp.106~118.

37) T. Kelley and R.E.Seiler(1986), op.cit., lp.18.

38) M. Ibrahim, op.cit., p.6.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豫算과 成果의 관계는 動機賦與 뿐만 아니라 能力, 知覺 및 現場業務活動에 의해서 조정된다. 현장업무의 구체화에 대한 중요성은 成果報告書가 結果를 강조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이들 結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監査環境에서 豫算過程(budget process)은 時間豫算을 어떻게 달성했느냐 보다는 成果目標로서 時間豫算達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監査, 個別監査人 및 會計法人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成果目標로서 時間豫算의 지나친 강조는 시간예산이라는 成果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감사인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대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時間豫算이 타이트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산달성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여겼을 때 감사인들은 自己防禦的 措置로서 豫算을 달성한 것처럼 하는 “豫算게임(budget game)”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成果評價가 時間豫算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감사인들은 초과근무를 하고 그것을 時間報告書에 기록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監査節次를 완료한 것으로 서명(sign-off) 할 수 있으며 심지어 職務不滿足, 轉職(Fleming 1979, Lightner 등 1982)에 이르는 逆機能的인 行爲를 낳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豫算시스템이 수행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 完了表示하거나 業務時間을 過小報告 하도록 하는 行爲를 유발하는 경우 그런 예산시스템은 예산시스템의 목적과 상반되는 行爲를 낳는 것이며 監査實施基準에도 違背되는 行爲를 낳게 된다.

IV. 時間豫算壓迫下에서의 監査人の 行爲

1. 時間豫算 壓迫要因

時間壓迫은 監査業務의 完了時期와 관계없이 감사에서 소비되는 總時間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豫定業務時間의 단축과 監査完了에 대한 被監査會社등의 마감기한의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時間壓迫은 회계법인 자체내의 要因과 피감사회사 등의 外部環境에 의해서 생긴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회계법인도 利益創出에 목적을 둔다. 利益은 監査報酬로 나타나는 收益이 原價(기본적인 것으로 직원의 급여)를 초과할 때 실현된다. 그러므로 收益性(profitability)을 개선하는 수단은 수익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직원의 급여는 특정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수익성 계산은 감사를 수행하는데 소비되는 時間과 人力을 最小化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³⁹⁾

경쟁적 감사환경에서 監査收益은 監査報酬는 피감사회사의 유치를 위하여 割引되는 경향이 있

39) D.E. Marxen, op.cit., p.48.

으며 또한 감사서비스에 대한 自由先任權, 監査人 交替權, 監査手數料 지급권을 갖는 피감사회사들의 감사인 교체의 주된 요인이 低監査手數料⁴⁰⁾라는 점을 감안할 때 單位 監査手數料의 증대를 통해 監査收益의 증가를 기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자체관리에 의해 監査費用을 절감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감사수수료가 낮아질수록 감사에서의 限界利益이 유지되도록 原價節減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들의 임금은 거의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감사에서 소비되는 시간과 투입인력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特定監査에 대한 時間豫算이나 監査日程을 줄임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결과 감사업무수행과 관련된 시간은 점점 적어지게 될 것이다. 더우기 감사인들은 監査時間을 추정할 때 直前年度의 監査時間을 근거로 時間豫算을 편성하고 거의 자동적으로 前年度의 監査時間을 줄이려는 성향을 갖는 경우⁴¹⁾에는 감사인들의 시간예산에 대한 압박감은 더욱 가중되게 될 것이다.

회계법인에서의 豫算過程은 앞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직의 주요상품인 감사서비스에 대한 統制裝置이다. 時間豫算은 監査인들이 實際業績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고 중요한 差異(budget variance)는 有利, 不利인 특정감사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例外的 管理對象이 된다. 그러므로 개별감사인들의 豫算成果는 그 監督者들의 注意를 환기시키게 되고 그러한 注意는 감사인의 경력개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감사인들에게 시간예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⁴²⁾.

監査過程에서 成果評價基準으로서의 時間豫算을 맞추도록 하는 부당한 강요는 감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壓迫感(pressure)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회계법인에서 작성되는 時間豫算은 以前 年度의 實際業務時間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예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時間能率에 의해 평가를 받는 감사인들에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게 하는 압박요인이 되는 것이다.⁴³⁾

시간압박을 주는 상황은 組織 外部環境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피감사회사 대부분의 決算日이 12월말일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그들의 신년도 업무개시나 주주총회보고를 위해 임의로 날짜를 맞추려고 시도하는 경영자에 의한 마감기한의 강요와 外部 監督機關에의 報告期限⁴⁴⁾에 대한 압박은 감사인들의 시간적 압박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도 기준

40) J.P.Bedingfield and S.E.Loeb, op.cit., pp.66~69.

J.W. Eichenseher and D.Shields, "The correlates of CPA-Firm Change for Publicly-Held Corporation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spring 1983), pp.23~37.

41) G.F.Kermis and S. Mahapatra, op.cit., pp.261~273.

D.E. Marxesn, op.cit., pp.48~49.

42) G.F.Kermis,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Time Pressure on Inter-auditor Consistency," Syracus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1982.

43) M. Fleming, op.cit., pp.174~176.

44)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피감사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1주일 이전에,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으로 감사인 1인당 평균감사회사 수가 2.89사가 되어 감사인 4인이 1팀을 이루는 경우 감사대상 회사는 팀당 11개 이상이 되어⁴⁵⁾ 감사인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증대될 것이다. 또한 감사인 자신은 專門的인 知識과 技法을 구비하여야 하고 研修와 實務經驗을 통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연마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볼때 수많은 새로운 基準과 準則 그리고 급변하는 經濟環境 下에서 監査業務의 複雜性 增大는 또 하나의 감사업무에서의 시간적 압박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場監査人들의 作業環境은 계속된 변호, 타이트한 일정 및 마감기한 등의 압박감에 둘러 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회계법인 자체의 예산과 피감사회사의 압력을 통해 이루어지는⁴⁶⁾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헨보고서(Cohen Commission)에 의하면 회계법인이 피감사회사를 새로이 유치하고 기존 피감사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競爭 그리고 專門家精神(professionalism)과 獨立性 보다도 법인의 收益과 利得을 더 강조한 결과 監査人의 誠實性이 손상될 정도로 원가를 줄이게 되고 그에 따른 비현실적인 時間制約은 감사인의 業務의 質에 逆效果를 가져 왔다⁴⁷⁾고 하고 있다.

2. 時間壓迫下에서의 監査人의 防禦的 行爲

組織은 미래활동을 계획하고 豫算道具를 이용하여 설정된 目標을 실제적으로 진행되도록 감독한다. 예산도구가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그것이 개발되고 수행되는 환경에 달려 있으며 환경의 중요한 요소는 人間相互作用要素로서 인식되어진다. 예산은 성공적 과업성과에 대한 상위자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結果를 강조하는 狀況⁴⁸⁾이라 할 수 있다.

時間豫算壓迫은 감사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能率(efficiencies)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예산에서 존재할 수 있는 슬랙(slack)⁴⁹⁾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지난해의 監査時間을 분석하고 시간압박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게 한다. 더우기 개인적인 시간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職

45) 이근수, 전계서, p.18.

46) D.R.Carmichael, "The Auditor's Role and Responsibilities", The Journal of Accountancy (August 1977), pp.55 '60.

47) Subcommittee On Report, Accounting and Management, Improving the Accountability of Publicly owned Corporations and their Auditor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77, pp.14~16.

48) J.Ronen and J.L.Living sone, "An Expentancy Theory Approach to the Motivational Impacts of Budgets,"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75), pp.674~675.

49) 슬랙(slack)이란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직슬랙과 예산슬랙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다. 예산슬랙이란 예산설정과정에서 의도적인 정보의 왜곡과 관련되는 것으로 예산수익의 과소진술이나 예산원가의 과대진술로 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A. Belkai, Behavioral Accounting, Greenwood Press, Inc, 1989, p.41.

業專門家로서의 艱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監査人行爲의 肯定的 側面을 가질 수 있다.⁵⁰⁾ 즉,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사람에게 따라서는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한다가 時間報告書에 實際作業時間을 모두 보고함으로써 時間壓迫에 대응하려고 할 수 있는 반면 監査業務量을 줄임으로서 時間壓迫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동이론에서 제시되는 예산원칙은 예산이 타이트하지만 달성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예산에 느슨하면 달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또한 너무 타이트하면 그것은 달성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고 노력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誘引을 주지 못하고 負의 動機誘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¹⁾.

Argyris(1952)는 예산이 압력수단(pressure device)으로 이용되면 그것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경영자에 대항하여 단결토록하게 되며 부문감독자는 조직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가 상충될 때 자신의 목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⁵²⁾고 하여 예산의 역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Hopwood(1972)⁵³⁾에 의하면 타이트한 예산은 하위자들의 동료와 상급자의 관계를 우호적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또한 그들의 평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압박으로부터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은 操作的 行爲(manipulative behavior)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산압박과 슬랙에 있어서 기존연구들(Argyris 1952; Lowe and Shaw 1968; Schiff and Lewin, 1970; Hofsted, 1968; Onsi, 1973)을 검토한 Fleming(1979)은 예산은 첫째, 종업원의 태도와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둘째, 예산에 있어 슬랙(slack)을 창출함으로써 종업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동기를 주고 셋째, 職務不滿足, 攻撃的 行爲 및 從業員의 非能率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⁵⁴⁾ 또한 예산문제와 관련하여 종업원들의 행동적 차원은 조직스트레스이론에 의해서도 설명되어진다. 즉 個人的 職務스트레스(job stress)가 낮으면 개인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성과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반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스트레스 對處에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職務成果에 대한 노력을 줄이게 되어 그 결과 직무성과는 낮아진다⁵⁵⁾는 것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50) G.F. Kermis, op.cit., p.31.

T. Kelley and R.E Seiler, "Auditor Stress and Time Budgets," the CPA Journal (December 1982), pp.24~37.

51) G.H. Hofsted, The Game of Budget Control, Grand Publishing Inc, New York, 1967.

52) D.T. DeCoster and J.P. Fertakis, "Budget-induced Pressure and its relationship to Supervisory Behavior,"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68, pp.237~246.

53) Anthony g.Hopwood, "An Empirical Study of the Role of Accounting Data in Performance Evaluation," Empirical Research in Accounting: Selected Studies, 1972, pp.158~182.

54) M. Fleming, op.cit., pp.25~28.

55) M.Jamal, "Relationship of Job Stress to Job Performance: A Study of Managers and Blue-Collar workers," Human Relations, Vol.38, 1985, pp.409~424.

서 종업원들은 政治的 攻略(politicking)이나 怠業(sabotage) 등의 對處方案을 찾게되어 조직이나 개인에게 역기능적인 것이 된다⁵⁶⁾는 것이다.

회계법인에 있어 지나친 예산압박은 개인에게 예산을 이행한 것처럼 하는 행위(budget game)를 강요할 수 있으며 그것은 전반적인 조직목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즉, 감사인들은 조직 전체성고가 떨어지는 결과가 되더라도 개인적인 입장을 최대화하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業務의 質을 떨어 뜨림으로서 이를 수 있는 것이다⁵⁷⁾. 감사현장에서 이러한 행위는 감사에 소비된 時間을 過小報告(underreporting)하거나 또는 監查節次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監查節次를 終結(sign off)함으로써 監查의 質을 떨어 뜨리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코헨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감사인들이 判斷錯誤(誤謬, 省略, 誤記를 발견하고 試查範圍에 대한 判斷)와 피감사회사의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신뢰한 결과이고 그 주된 원인은 지나친 時間豫算壓迫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시간압박은 서투른 계획과 부적절한 監督, 監查目的과 節次的 理解不足, 부적절한 經驗과 知識을 가진 인원의 배치 및 會計原則의 부적절한 選擇과 適用등의 監查失敗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다⁵⁸⁾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시스템이 수행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完了表示(sing-off)하거나 업무를 수행했지만 계약목적으로 시간을 보고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를 유발시키는 경우 예산시스템은 예산시스템의 목표와 상반되고 監查基準에도 違反되는 行爲⁵⁹⁾를 낳는 것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들다 회계법인이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감사인에게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Kelley(1984)는 다음과 같은 가상적인 예를 들고 시간압박 하에서 감사인들의 逆機能的인 防禦措置(disfunctional protective steps)와 그것이 監查의 質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⁶⁰⁾.

〈사례1〉 責任時間의 過小報告(underreporting chargeable time)

스미드는 ABC회사의 감사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80시간을 배정받았다. 며칠 후 Jim은 자기업무를 수행하는데 100시간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주말에 Jim은 16시간을 작업했고 감사시간을 보고할 때 이 시간을 보고하지 않았다.

〈사례2〉 監查業務領域內에서 時間業務의 移轉

존은 XYZ회사의 감사에서 외상매출금과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업무할당되었고 주어진 감사시간은 외상매출금 40시간, 재고자산에 60시간이었다. 그는 실제로 각 영역에서 50시

56) R.M.Sterrs, Introduction to Organizational Behavior, Scott Foresmana and Company, 1981, pp.365~368.

57) G.F.Kermis, op.cit. p.31.

58) The Commission on Auditors' Responsibilities, op.cit., pp.106~118.

59) M. Ibrahim, op.cit., p.4.

60) T. Kelley, "Time-Budget Pressures and Auditor Behavior,"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uston, 1984, pp.2~10.

간씩 소비되었지만 時間差異를 평준화하기 위해 시간보고서에는 예정된 시간대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豫算差異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적어도 피감사회사는 자기가 작업한 100시간에 대해 감사보수를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사례3〉 監査質 低下行爲 (reducing audit quality)

존은 150시간의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예정된 시간내에 자기업무를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존은 특정 감사절차가 거의 필요없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그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또한 감독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감사절차에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완료표시 (sign-off) 했다.

〈사례1〉은 監査人이 時間豫算에 맞추기 위해 實際業務時間 (chargeable time) 을 過小보고한 경우이며 〈사례2〉는 감사의 특정 범위내에서 責任時數를 옮긴 것이지만 실제 작업시간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사례3〉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또 節次的 省略을 言及하지도 않은 채 監査節次에 미리 署名 (prematurely sign-off) 함으로서 監査의 質을 低下시키는 行爲이다.

監査의 質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會計監査의 公共性을 감안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반대중은 監査人들이 專門家的인 방법으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만일 일반대중의 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다면, 사회에 있어 감사인의 기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監査人의 責任委員會 (Commission on Auditors' Responsibilities: CAR, 1978)⁶¹⁾에서는 Rhode (1978)에게 時間豫算壓迫이 監査의 質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도록 하였고 Rhode (1978)⁶²⁾의 연구결과에 의해 위원회는 時間豫算壓迫은 監査의 質에 역효과를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계법인에서 時間豫算壓迫이 監査의 質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시간예산압박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實際業務時間을 過小報告하는 行爲도 회계법인에서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책임시간을 과소보고함으로서 감사인들은 타이트한 豫算制約을 달성하면서 높은 監査質을 유지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과소보고된 시간은 회계법인에서 監査手數料 결정을 잘못내리게 함으로서 손실을 입게 된다. 과소보고된 시간이 감사계약에 이용되지 않아도 작업한 모든 시간이 시간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즉, 감사수수료계약은 현장감사인이 아니라 회계법인의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감사회사와의 계약에서 업무시간이 적절하게 고려될 수

61) The Colmission on Auditor's Responsibilities, The Commission on auditors' responsibilities: Report,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New York, 1978.

62) J. Rhode, op.cit.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책임시간 과소보고는 감사인들의 補償을 줄이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대부분의 회계법인에서는 보조감사인들에게 초과시간에 대해 급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인에게 중대한 機會原價(oppportunity cost)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인들은 중대한 예산초과가 미래 승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시간을 과소보고 하려는 동기를 갖는다. 또한 過小報告行爲는 監査의 質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키지는 않지만 시간예산의 추가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기 때문에 차후에 계속되는 감사에 있어 <사례3>과 같이 감사결찰을 수행하지 않거나 기준이하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질을 직접적으로 떨어 뜨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⁶³⁾.

감사실시 영역내 책임시간을 이전하는 행위는 감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적정한 시간이 피감사회사에 부과된다는 면에서는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차후년도 동일 감사업무에 맞게 되는 감사인에게 보다 심각한 방어적 행동을 취하게 한다. 더구나, 피감사회사의 문서를 피상적으로 검토한 후에 업무를 종료시키는 경우와 같이 회계법인내 관리자에 의해 발견되지 않는 방법으로 감사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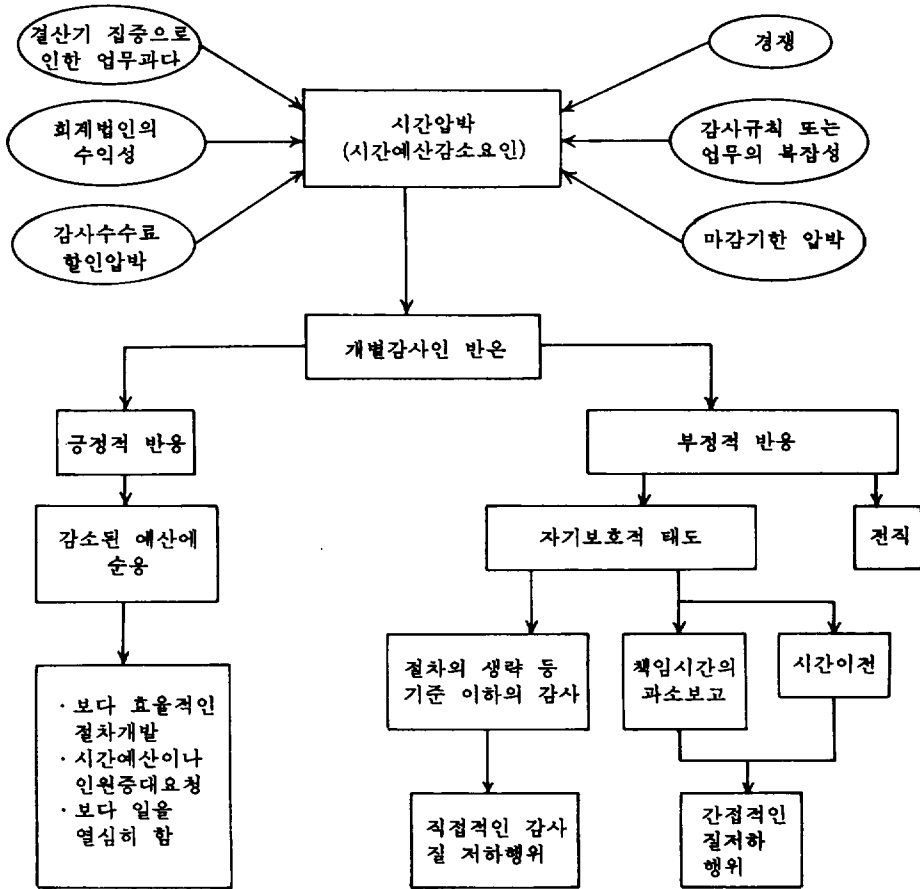
본절에서는 감사인들의 업무환경에서 예상되는 시간압박과 그것이 감사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의 질과 관련하여 살펴 보았다. 시간압박하에서 감사인들의 이용가능한 방법은 <그림3>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감사인들은 組織內的·外的인 요인으로 인하여 개별감사인들의 시간압박에 대한 知覺程度에 따라 자기 스스로의 防禦措置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順機能的인 側面(긍정적 측면)과 逆機能的인 側面(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不實監査 내지는 監査失敗의 관점에서 監査人들이 時間豫算壓迫은 順機能的인 次元보다도 逆機能的인 관점에서 고려되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監査手數料는 被監査會社의 總資産規模에 의해 결정되므로 固定監査手數料라는 면에서 볼때 앞의 Kelley(1984)의 監査의 質低下行爲 중 직접적인 監査質 低下行爲인 경우가 우리나라의 감사실정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監査의 質 低下行爲는 證券監督院의 監理委員會에 의해서 지적된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즉, 企業會計基準의 違背事項 未指摘, 監査報告書의 不實作成, 監査節次的 實施疎忽에 해당되며 특히, 不實監査의 유허중 企業會計基準에 違背된 會計處理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경우가 전체 不實監査 指摘件數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1988년도 기준 34%), 1990년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監査業務의 質의向上과 改善을 유도하기 위해 審理重點事項으로 들고 있는 내용인 1) 會計監査基準 및 準則에 제시된 중요 監査節次的 履行與否 2) 監査細部計劃의 樹立과 細部計劃에 따른 監査業務의 實施與否 3) 資産評價(賣出價權, 在庫資産, 有價證券

63) M. Fleming, op.cit., p.38.

S.M. Lightner, J.J. Leisenring and A.J. Winters, "Unedrreporting Chargeable Time," Journal of Accountancy, (January 1983), pp. 52~55.

〈그림3〉 時間壓迫要因과 監査人行爲



등)을 위한 照會, 確認 등이 監査節次の 實施疎忽 4) 企業會計基準 違背事項 未指摘과 일치되어 監査實施過程에서 생길 수 있는 省略이나 誤謬 등의 감사업무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監査의 質 문제는 監査人の 獨立性 문제 뿐만 아니라 監査業務現場에서 이루어 지는 監査質 低下 行爲問題 특히, 時間豫算(監査日程) 壓迫으로 인한 監査人들의 質低下行爲에서 不實監査의 主된 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V. 結 論

財務報告시스템(financial reporting system)의 質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監査의 質과 관련되어 진다. 會計情報利用者들이 합리적인 意思決定에 유용한 財務報告를 위해서는 기업실체에 의해서 제공되어 지는 會計情報의 質에 대한 믿음을 줄 수가 있어야 한다. 虛偽財務報告의 防止를 위해서 그리고 監査의 信賴性 確保를 위해서는 독립된 감사인들이 수행하는 監査業務의 質的維持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監査時間豫算은 監査業務의 效果的이고 能率의인 수행을 위해서 設定되어 지는 것이다. 監査受任을 위한 경쟁적 환경하에서 이러한 時間豫算은 經濟環境의 變化에 따른 業務의 複雜性, 時間豫算의 短縮 및 被監査會社 등의 요구에 의한 報告期限壓迫 등은 監査人들이 監査業務를 실시하는 현장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環境의 要因으로서 時間豫算壓迫의 주된 要因이다. 成果評價基準으로서 時間豫算達成의 지나친 강조는 監査人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防禦的 措置를 취하도록 하는 誘引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防禦的 行動의 結果는 監査, 個別監査人 및 會計法人에 逆機能의인 結果를 초래할 수 있다. 즉, 時間豫算壓迫에 대한 逆機能의인 對處手段으로서 監査人들은 필요한 監査節次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거나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監査節次를 수행한 것으로 完了表示(prematurely sign-off)한다든지 實際 監査時間을 過小報告하는 行爲를 할 수 있다. 이러한 行爲는 監査의 質의低下를 가져오고 不實監査 내지는 監査失敗의 주된 原因으로 작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監査의 質을 논의함에 있어 監査人의 獨立性 問題 뿐만아니라 監査現場에서 이루어지는 監査의 質低下行爲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監査現場에서 監査의 質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에서는 감사인들이 합리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監査計劃과 관련된 時間豫算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被監査會社의 業務 複雜성과 規模를 고려하여 달성가능한 수준의 時間豫算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現場監査人인 責任會計士와 補助監査人들의 현장업무를 檢討하고 監督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自體審理制度(peer review)의 導入 및 強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경쟁적 환경하에서 監査手數料 引下가 會計法人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라도 時間豫算을 설정함에 있어 監査手數料 規模만을 고려하여 時間豫算을 줄여서는 안된다. 그런 경우 不實監査 등으로 인한 監査結果에서 초래될 수도 있는 危險은 個別監査人 보다도 그런 결정을 한 회계법인에 그 責任을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Summary

The Audit Environment and Audit quality

Lee Sang-bong

Since the change in the audit engagement system from a proportional assignment to an open competition by the Ministry of Treasury in August 1984, the competitive situation in Korean audit market has triggered the issue of audit quality as an important topic among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Under competitive audit environment, auditors have experienced time pressure due to increased work load resulting from the tight time-budget, reporting deadline, and clustering of the clients' fiscal year-end on December.

An overemphasis on the achievement of time-budget as a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on may cause a dysfunctional behavior by auditors because they take various actions (protective steps) to protect themselves. For example, as a dysfunctional protective step to reduce the time-budget pressure, auditors may (1) prematurely sign-off the audit procedure without completing the required audit program or with only a partial completion, or (2) underreport the actual time that they spend. This kind of auditors' dysfunctional behavior may be a main reason for the "audit quality reduction" and "audit failure".

It is suggested that accounting firms should take the following ac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audit.

1. A reasonably achievable level of time-budget must be established by considering the complexity, the work load, and size of for the client.

2. A system must be designed by which the performance of field auditors (both incharge and staff auditors) can be supervised and evaluated. Specially, a peer review system should be used and emphasized.

3. The size of audit fee must not be the only factor in establishing time-budget even if the reduction in audit fee is necessary due to compdtitive situation.